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34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서삼석·박홍배·정을호

이개호 • 문금주 • 박수현

김원이 · 위성곤 · 이병진

문대림 · 소병훈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나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
- 2.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다음 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 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나 생 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 활물류서비스에 관한-----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 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신 설> 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 <신 설> 2.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 류취약지역 요금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② -----제1항제1 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 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 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